

[변론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론기

변의 열정과 지혜로 밝혀낸 ‘국기기관의 증거조작’

김용민 회원1)

‘국가폭력’ 악몽 떠올리게 한 충격적 사건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가장 어지럽게 만든 사건은 바로 국기기관이 간첩을 조작한 사건이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형식적이긴 하지만 사과까지 하고 국정원장과 국정원 2차장이 사표를 제출했던 사건이다. 참고로 아래의 그림이 바로 원본 출입경기록(위)과 위조된 출입경기록(아래)의 비교인데,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인 출입경기록의 일부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했고, 그것은 유우성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림 1. 출입경기록비교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6-10-15:17:22	二合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u>2006-05-27-11:16:36</u>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7-10 24:55	<연변조선족 자치주> [증제68호증]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6-10-15:17:22	三合
刘家刚	出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u>2006-05-27-11:16:36</u>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7-10 24:55	

<검사측 제출_ 화릉시>

1) 통일위원회

사실 이 사건은 이미 2013년 1월경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언론이 ‘탈북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사실은 간첩이었고 약 1만 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동아일보 2013. 1. 21.자 보도),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2월 26일 언론보도와는 달리 1만 명이 아닌 약 200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대폭 축소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그마저도 2013년 8월 22일 1심 재판부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이후 국정원과 검찰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위조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에까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간첩’으로 지목되었던 유우성은 2014년 4월 25일성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국가폭력이라는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유우성은 어떤 이유에서 간첩으로 몰렸고 국정원과 검찰은 왜 증거를 위조해서까지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고, 어떤 방법으로 간첩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변론의 순간순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남한을 동경한 평범한 탈북자 유우성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은 북한에서 3대 째 태어나고 자란 재북화교이다. 그는 북한국적법상 북한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북한 주민들과 거의 동일하게 살아 왔고, 2004년 탈북하기 전까지는 준의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했었다. 그러나 다른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유우성도 북한사회에 대한 환멸과 남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을 감행, 남한행을 택했다.

그는 남한에 정착해 살면서 가끔 북한에 있는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했다. 사실 남한에서 북한의 가족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회령시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로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남한과 통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화통화는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도 탈북자에게 북한의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2006년 5월 22일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바로 당일 어머니가 북한 보위부에 적발되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여 장례를 마친 후 중국 친척집 등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그를 처벌하지 않겠다며 불기소처분을 했다.

한편 남한에서 막노동 등 온갖 고생을 하며 열심히 살아 온 그는 고생 끝에 연세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고 2011년 6월경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북한에 남아있던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더 이상 북한에 살고 싶지 않아 중국으로 이사 나오기로 결심하고 2011. 7. 9. 중국으로 완전히 이사를 나왔으며 어머니 묘소도 중국으로 이장했다. 그 후 2012년 10월 말경 평소 남한에 대한 동경이 컸던 여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여동생을 국정원에 탈북자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의 여동생은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 가는 국정원 관리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여동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화교신분을 실토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강제 출국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동생은 갑자기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털어 놓기 시작한다.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내용

여동생이 털어 놓은 간첩행위는 '유우성이 어머니 장례식 이후 4차례 북한에 밀입북했다'는 것과 '3차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다.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우성이 어머니 장례식 이후인 2006년 5월 말경 가족이 걱정되어 두만강을 건너 다시 북한에 들어왔다가 북한 보위부에 단속되었고, 그곳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한 뒤 간첩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빠가 한국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보낸다고 연락을 하면 자신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나가 PC방에서 메신저로 탈북자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총 9가지이다. 이를 세분화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06년 5월 23일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 밀입북 한 이후 다시 불상의 방법으로 밀입북 하였다가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북한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다. 그리고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2006년 6월 22일 남한에 잠입했다.

② 회령시 보위부에서 노트북을 사달라는 연락을 받고 인터넷으로 중고 도시바 14인치 노트북을 구입하여 포장한 후 2006년 8월 23일경 중국으로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을 보내 외당숙에게 우송하고 이를 보위부에 전달하게 했다.

③ 2007년 8월 중순경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밀입북했다.

④ 유우성은 연세대학교 중문과에 편입한 이후 여러 동아리, 단체에 가입하여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위부 반탐부부장에게 보고했다. 위 반탐부부장은 유우성의 여동생에게 두만강을 도강하여 오빠가 보내는 자료를 받아 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유우성은 2011년 2월경 두만강을 도강하여 연결소재 PC방에 온 여동생에게 QQ메신저를 이용하여 탈북자 약 50여명의 명단을 전달했고 여동생이 이를 USB에 저장하여 다시 두만강을 도강해 보위부 반탐부부장에게 전달했다.

⑤ 지속적으로 탈북자 정보를 수집했고, 2011년 5월경 수집한 탈북자 70~90여명의 정보를 여

동생에게 QQ메신저를 이용하여 전달했다(이 때 여동생은 두만강을 도강하지 않고 여권으로 중국을 왕래했다).

⑥ 여동생이 남한 침투 지시를 받아 이를 상의하고 여동생과 아버지의 중국 이사를 돕기 위해 2011년 7월 초순경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에 밀입북하고, 회령시 보위부 반탐부부장을 만나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⑦ 2012년 1월 24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에 밀입북했고, 회령에서 반탐부부장을 만나 표창을 받았으며, 반탐부부장에게 카메라 등을 선물로 제공하고 같은 날 밤 두만강을 도강해 중국으로 갔다.

⑧ 탈북자 단체 등에서 꾸준히 탈북자 정보를 수집했고, 2011년 6월 경 서울시에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탈북자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유우성은 2012년 7월경 수집한 탈북자 50~60여명의 정보를 연길에 있는 여동생에게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로 보냈고 여동생이 USB에 저장한 뒤 두만강을 도강하여 이를 보위부에 전달했다.

⑨ 2012년 10월 25일경 한국침투 지령을 받은 여동생을 중국 연길에서 만났고, 함께 한국에 들어올 여동생에게 항공권을 사 주었으며(편의제공),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위 9가지 범죄 혐의 중 2006년 8월 23일자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을 제외한 8가지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여동생의 진술이었다. 나머지 부수적인 증거들이 존재하나 대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만한 증거는 아니었다. 국정원은 2007년경 유우성이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밀입북 하였다는 정보를 포착하고 그 때부터 유우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 2013년 2월 26일 기소하기까지 유우성에 대한 간첩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여동생의 진술만을 토대로 그를 국가보안법위반(간첩)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동경하며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던 여동생이 왜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인가? 그냥 중국으로 추방되면 그만인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길래 서울시 공무원인 오빠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간 것일까? 여동생이 받은 조사과정에 그 답이 있다.

여동생, 국정원의 회유와 폭행으로 허위자백

여동생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입소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독방에 수용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처음 5일 동안은 친절하게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여동생의 진술을 청취했으나 5일이 지나자 '여동생이 화교'라는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했다(국정원은 2007년경 이미 유우성이 화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동생은 화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미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살

고 있는 오빠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 극구 부인했다. 그러자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의 가슴과 등에 “회령 화교 유OO”이라고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이고 다른 탈북자들이 머무는 숙소동으로 데리고 가 망신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른 탈북자들이 지나가고 난 후 회령에서 알고 지냈던 탈북자 혼자 여동생에게 접근하여 서로 알아보게 했고, 여동생도 결국 화교사실을 털어 놓게 되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화교인 사실을 알고도 ‘여동생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녀를 강제 출국시키지 않았다. 대신 갑자기 오빠의 밀입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여동생은 어머니 장례식 이후 오빠가 한 번도 북한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국정원 직원 2명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으며, ‘전기고문실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을 강하게 몰아 부치면서도 ‘오빠의 밀입북을 인정하면 오빠를 도와 줄 수 있다’ ‘오빠도 이미 밀입북을 인정했다’며 거짓말로 여동생을 회유했다(당시 유우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우성이 밀입북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여동생은 국정원 직원들의 폭행이 두려웠으나 한편으로 오빠도 이미 인정했고 국정원 직원이 오빠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이를 믿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여동생은 오빠의 밀입북만 허위로 인정하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에게 ‘오빠가 밀입북해서 무슨 일을 했냐’고 추궁을 하기 시작하더니 ‘오빠가 탈북자 정보를 넘기는 간첩행위를 했다’며 여동생을 몰아부쳤다. 여동생은 너무 황당하고 두려워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이어지는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해 다시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에게 ‘한국에서는 비행기를 폭파해서 사람을 죽인 김현희도 자백해서 다 용서해 주었으니 오빠의 간첩행위를 인정하면 오빠가 1~2년 정도 감옥에 다녀와서 같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으로 회유했다. 여동생은 폭행 등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과 강제추방이 아니라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을 믿었고, 오빠도 이미 자백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거짓말도 믿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것이다. 허위자백을 한 날 여동생은 너무 괴롭고 한편으로 억울하여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실패에 그쳤다.

이미 오빠의 밀입북과 간첩행위를 허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여동생은 국정원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이어 나갔다. 국정원 직원들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주고, 여동생으로 하여금 이를 암기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동생의 허위 진술서는 영화 <변호인>에서 본 바와 같이 외관상 제법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여동생은 2013년 4월 26일 기적적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름도 생소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에 의해서다.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가족과 전화통화도 하고, 지인을 만나게 된 여동생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 모든 진술은 거

짓이다. 국정원에서 폭행 등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고 했다. 물론 국정원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동생은 오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물로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자신이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국정원 직원과 검사의 위법한 수사가 어떠한지 모두 진술했다. 그러자 정부는 여동생을 강제출국시켜 버렸다. 여동생은 오빠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2013년 7월 중순 중국으로 추방됐다.

위법한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임이 밝혀지다

위와 같이 여동생에 대한 조사는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폭행, 협박 그리고 가혹행위 및 회유가 모두 공존한 위법한 수사였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1항 역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5년 1월 9일 가입하여 1995년 2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1조는 “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 동의 .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 제15조는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동생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문 내지 가혹행위, 기망 등이 존재하였다면 여동생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다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위법수사에 대하여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동생의 진술(국정원 진술조서 일부, 검찰 진술조서)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5가지 사유를 들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 여동생이 화교신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장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②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점, ③ CCTV가 설치된 독방, 외부잠금장치 설치, 달력을 제공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유지 어려움, 외부와의 연락 불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금을 한 점,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점, ⑤ 여동생에게 모욕과 망신주기로 수사관들의 조사 권한 남용하였으며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회유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여동생의 국정원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수사기관에 의한 사건 조작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한 것이고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를 지적한 매우 용기 있는 것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동생의 증거보전 절차는 검사의 비공개 신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아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여동생의 진술이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동생의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자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여동생의 진술은 모두 허위였다. 여동생은 북한에서 나고 자라 한국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면 무죄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무죄를 다투면 중형과 추방, 자백하면 선처 및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오빠가 이미 자백했다'는 말에 속아 허위진술한 것이고,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로 인신구제신청

검사는 2013년 2월 26일 유우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9가지와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여동생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으로 추방가능성이 있어 미리 그녀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여동생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2013년 3월 4일 안산지원에서 증거보전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변호인들은 '증거보전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본안 재판부 배당이 되었으므로 본안 재판부로 이송해달라', '기일이 급하게 잡혀 재판준비 시간이 부족하므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절차를 강행했다. 증거보전재판에서 여동생은 검사의 주신문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상당부분 진술을 번복했다.

증거보전절차를 마친 후 변호인단은 여동생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중국 연길에 직접 증거를 수집하러 갔다. 변호인단은 총 4회의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간첩혐의에 대하여 재판부가 보수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여 국가보안법사건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재판부는 일단 5일 안에 종결할 수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여동생이 국정원의 불법 구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여 재판일정이 도저히 5일 이내에 종결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이 사건에서 몇 번의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 중 하나가 여동생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결과이다. 여동생은 2012년 10월 30일 한국에 입국한 이후 줄곧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있었고 변호인의 접견도 거부되고 있었다. 아마도 검찰과 국정원은 여동생이 변호인을 만나는 순간 허위자백이 무너지고 위법한 수사과정이 드러날 것이라 염려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어떻게든 여동생을 만나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 생각하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왔게 되었다. 여동생은 변호인에게 국정원의 회수와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여동생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힘겨운 법정투쟁, 결국 제1심 무죄

그 이후 여동생은 오빠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우 힘겨운 법정 투쟁을 했다. 이전 진술이 모두 허위자백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법정에서 탈진하기를 수차례 반복했고, 수시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 이외에도 여동생을 조사한 국정원 직원들과 ‘유우성을 북한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 다음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유우성이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을 북한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허위로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우성의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압수하여 저장된 사진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진은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정황을 밝혀냈고, 검찰이 유우성의 전화통화 기록을 기소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화기록과 다른 공소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하지못해 변호인이 지적한 증거를 제출했다.

1심 법원은 2013년 8월 22일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9가지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사실 여동생의 진술이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여동생이 자신의 기존 진술은 모두 허위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가 없게

된 셈이었다. 한편으로는 여동생의 기존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모순점들이 발견되었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탈북자 명단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2번이나 도강했다고 진술했는데 전화나 팩스로 전달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두만강을 도강할 이유가 없었다. 여동생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QQ메신저를 이용해서 명단을 파일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여동생의 QQ메신저 가입일이 명단을 받았다는 날보다 뒤였음이 밝혀졌다. 나아가 오빠가 밀입북했다는 시기에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중국에서의 통화내역 등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여동생의 기존 허위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모순되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검찰과 국정원의 ‘위험한 선택’, 위조증거 제출

검찰과 국정원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즉각 항소했다.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혐의가 전부 무죄로 된 사안이라 검찰로서는 항소심 재판에서 무엇인가 반전의 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급해진 검사는 대담하게도 매우 ‘위험한 선택’을 했다. 다른 아닌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위조문서는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었다. 위조 출입경기록에 의하면 유우성이 어머니 장례식 이후 다시 북한에 들어 간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검사는 ‘변호인과 피고인이 1심에서 거짓말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며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이후 다시 북한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가짜였다. 발급할 수 없는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유우성의 실제 여권기록과도 맞지 않게 위조되어 있었다. 유우성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고, 관인에 찍힌 담당부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중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출입경기록 등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검사는 위조된 문서 2가지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2개의 문서는 육안으로도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저급’한 것이었다. 팩스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한 2개의 중국 공문서(화룡시 공안국)는 보낸 팩스번호가 서로 달랐고, 팩스번호마저 피싱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번호였다. 아래 그림2에서와 같이 선양총영사관에 처음 접수된 화룡시 공안국의 팩스공문은 오전 9시 20분경 발신번호 “96802000”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보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지 약 1시간 20분 뒤인 오전 10시 40분경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발신번호만 “04334223692”로 변경하여 보냈고 선양총영사관이 이를 접수했다. 발신번호 “04334223692”는 화룡시 공안국의 정식 팩스번호이므로 국정원에서 정교하게 위조하기 위해

다시 보낸 것이다. 이 정도로 허술한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한편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이 팩스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FROM 96802000 WED NOV 27 09:20:22 2013 PAGE 1 OF 1

FROM 04334223692 WED NOV 27 10:40:22 2013 PAGE 1 OF 1

그림 2. 화룡시 공안국 팩스번호 비교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은 문서의 위조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중국 정부에 ‘중국정부에 검사가 제출한 서류와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증거위조 들통

중국정부는 자국에서 조사를 한 후 중국대사관을 통해 2014년 2월 13일경 법원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재판부에 보내왔다. 중국정부의 회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서류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2건은 적법하며, 내용도 맞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쉽게 위조가 밝혀질 수 있는데 검사와 국정원은 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을까? 아마도 보통 중국정부가 답변을 안 해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검사는 공문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가족이 발급받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다르다면 검사가 제출한 출입국기록이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호인이 아무리 위조를 주장해도 검찰이 근거로 제출한 공문의 공신력을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정부에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할 테니 검찰과 국정원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위조 항변을 예상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회신이 온 2014년 2월 13일 경 국정원 직원들이 협조자를 통해 다른 공문서를 또 위조했던 사실이 밝혀져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검찰과 국정원의 이와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중국정부는 사실 그대로 회신을 보내왔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사실 변호인들은 중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을 때라 중국 정부가 수사기관에 우호적인 답변해 주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중국정부의 회신이 도착하자 검찰과 국정원은 중국정부의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억지주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위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이에 대해 수사를 했고,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공판 검사들은 그제서야 출입경기록을 포함한 위조증거들을 모두 철회했다.

간첩조작 인정한 역사적 판결

항소심은 사실 큰 쟁점 없이 쉽게 종결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검찰이 예상치 않게 위조 증거를 제출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조된 증거가 형사재판에 현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 그 위조를 국가기관이 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사건’이었다.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그 자체였다.

증거 위조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았다. 매우 당당한 태도로 공소를 유지하였고, 오히려 유우성에게 새로운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 증거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을 괴롭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위조증거 제출과 그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했다. 그 결과 1심의 판단과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합동신문센터의 조사과정에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면서 위법한 수사절차에 의한 진술이라는 것이다. 유우성의 간첩혐의는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공동변호인단의 구성과정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행운이 따랐다. 유우성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우성은 2013년 1년 10일 간첩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체포구속 통지 없이 수사가 진행되다가 같은 달 18일 경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에 사건이 접수되어 민변 통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정원은 유우성을 체포하고도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체포통지를 하지 않았다. 천주교 신부(영한우리 지도신부)가 수소문 끝에 국정원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신부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민변에 변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변은 천낙봉(당시 통일위원장),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설창일, 김진형, 김남국, 이광철 변호사와 장연희 간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 이후 여동생에 대한 보호하기 위해 여성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

유정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세했다. 유우성의 국내 보호자 및 신뢰관계인인 신부와 목사도 도움을 줬다.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장경옥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유우성을 접견했다. 국가 보안법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피의자들이 낙심하고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 접견은 한시가 급했다. 장경옥 변호사가 접견을 가고 나자 국정원 직원들은 유우성에게 “하필 저런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징역 3년 나올 거 5년, 7년 나오게 하는 변호사이다”라고 말하며 이간질을 했다. 당시 유우성도 매우 당황했다고 뒤늦게 변호인들에게 고백했다. 장경옥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나서 2013년 1월 21일 동아일보는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인데 탈북자 1만 명의 정보를 북에 넘겼다는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국정원이 먼저 여론전을 치고 나온 것이다.

변호인 접견 차단, 대질 거부

유우성은 수사기간 내내 여동생과의 대질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은 끝까지 이를 거절했다.

나는 국정원 조사동 변호인 접견실에서 유우성을 처음 만났다. 당시 유우성은 긴장하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다. 유우성은 ‘여동생이 미친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동생이 화교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이러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여동생이 허위로 오빠를 간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유우성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돌아왔다. 나 뿐만 아니라 장경옥, 천낙봉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동 변호인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변호인들이 유우성을 접견하고 조사에 참여도 하자 국정원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유우성에게 자필 진술서를 쓰라고만 요구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실 국정원은 2013년 1월 10일 유우성을 체포했고, 그 이후 유우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8일 동안 수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유우성이 국정원의 압력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아 그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여동생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유우성에 대한 추가 수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유우성은 검찰조사에서 여동생과의 대질을 하지 않는 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은 끝내 대질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유우성과 여동생은 공범인데 공범 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피의자가 대질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대질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말이다. 수사기관은 대질을 통해 진술을 일치시키는 것보다 유우성과 여동생이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수사기관은 일방적으로 여동생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유우성에게 전달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치졸한 방법을 사용했다. 변호인이 여동생을 찾아가 접견하려 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인

은 증거보전절차에서 여동생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에도 영상진술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했고,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남매가 5분만 대화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했으나 검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검사가 이처럼 두 사람의 대화를 완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숨겨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국정원의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방해

변호인단은 여동생의 진술이 실제로 유우성의 간접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동생 역시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가기로 했다.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위치나 현황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 국회의원에게 문의를 해도 알지 못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국정원을 합동신문센터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고 폐쇄적인 공간이다. 결국 수소문 끝에 종교단체를 통해 어렵게 주소를 확인하고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다. 2013년 2월 6일 천낙봉, 장경옥 변호사와 내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서 국정원이 관리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접견을 갔다.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다. 접견신청서를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결국 111에 전화를 해서 어렵게 담당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한 후 그에게 팩스로 접견신청서를 보냈다. 접견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기로 하고 일단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갔다. 국정원 수사관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다시 장경옥 변호사가 전화하여 재촉을 하자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 여동생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접견은 변호사의 권리이기도 하고 여동생이 변호인 접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만나겠다고 했다. 국정원 수사관은 변호인 접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있다는 답변만 하고 ‘돌아가라’고 했다. 변호인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권총을 찬 경비원들이 나가달라는 요구했다. 우리는 그 경비원들에게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외부용역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곧바로 거절했다. 국정원의 접견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장경옥 변호사의 뜻밖의 제안, “중국으로 현장조사 가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 배당까지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원에서 여동생에 대한 증거보전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의 대표적인 꼼수였음에도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절차를 강행했다. 당시 증거보전 재판에는 나와 천낙봉, 장경옥, 양승봉, 김진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여동생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우선 여동생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게다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겁에 질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다. 여동생은 증언을 마치면 다시 합동신문센터에 돌아가야 하는데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였다. 게다가 변호인들도 기록을 뒤늦게 입수하였고, 준비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신문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었다. 유우성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여동생의 진술이 엇갈리자 유우성은 여동생을 다그쳤고 여동생은 결국 주요 진술들을 반복하거나 답변을 하지 못했다. 특히 유우성이 북한에 갔다고 했던 시기에 중국에서 가족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물었을 때에는 여동생도 하염없이 울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증인신문을 거친 이후 장경욱 변호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중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사진도 받아 오자고 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회의를 거쳐 천낙봉, 장경욱, 양승봉 변호사와 나는 중국으로 현장조사를 가기로 했다. 중국에서 만난 유우성 아버지와 외삼촌 등 가족들은 처음에는 변호인단이 돈도 안 받고 변론을 하면서 중국까지 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일 것이라 의심했다. 가족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족과 무관한 현장조사들만 하고 돌아 왔는데 뒤늦게 가족들과 오해를 풀게 되었다. 그 이후 3차례 더 중국을 방문하여 유우성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됐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여동생 구출

이 사건에서 유우성이 무죄판결을 받고 수사기관에 무리해서 증거까지 조작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여동생을 합동신문센터에서 구출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동생은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직후 용기를 내어 종전 진술을 반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고, 그 결과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변호사들이 변론을 함에 있어 새로운 시도나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연구모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나는 여동생에 대한 증거보전재판 이후 2013년 3월 6일 통일위원회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하게 되었다.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와 법령들을 검토했다. 내 눈에 크게 들어 온 것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였다. 이 법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인데, 체포 . 구속을 제외하고 국가기관에 수용된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연구모임에서 이러한 제도를 소개했고, 다양한 토론을 했다. 여동생이 불법구금되었다는 상황인식과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최장 6개월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인 4월이면 강제 추방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결국 시간이 촉박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이러한 청구를 해 본 적이 없었던 점과 실패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 인용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따라 일단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적으로 청구인은 유우성 본인이 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변호인단보다는 다른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동일하게 시일이 촉박하여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장경옥 변호사와 나는 다시 문제제기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니 일단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인의 의견대로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문제점에 대해 소송경험이 있는 황필규 변호사와 염형국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구서 접수 이후 국정원의 답변서가 왔고, 재판기일이 정해졌다. 2013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신구제청구 재판이 열렸다.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선임계를 모두 들고 갔다. 예상대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동생은 신문과정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것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 강제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인신구제 청구서 부분을 받아 매우 당황하여 그 다음 날 여동생에 대해 비보호결정을 한 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아 와,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동생이 그 동안 자의로 있었는지 강제구금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보호결정 이후 더 이상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을 법적인 근거와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여동생은 1개월의 출국기간 내에 출국하기만 하면 되니 그 동안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판장도 여동생에게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국정원 직원이나 대리인들은 물론 유우성과 우리 변호인단 모두 매우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는가보다 했다.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여동생의 자유의지였다. 여동생은 자신이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해는 했지만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이나 오빠에게 어떤 불이익일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 변호인단과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 1시간 30분 동안 법정과 법원 복도 등에서 대치했다. 우리는 여동생에게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 주었다. 6개월 만에 처음 통화한 것이다. 아버지는 '변호사들을 따라 가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친척 및 지인과의 통화를 하게 해 주었다. 모두 '국정원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은 결정하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위축시켜 버린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국정원 여직원들이 여동생을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서 '큰삼촌'이라 불리는 지휘관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필사적으로 여동생을 설득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우성의 변호인단은 모두 남자들이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화장실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러자 보다 못한 한 여기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중재를 했다. 우리는 급하게 민변의 장연희 간사를 불렀다. 정말 다급한 순간이었다. 만약 이대로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돌아간다면 여동생이 당할 고초도 예상되었지만 유우성이 입을 마음의 상처도 걱정되었던 것이고 변론에도 중요한 변수가 생기는 것이다. 장연희 간사가 급하게 법원으로 와서 여자화장실

에 들어가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여동생은 하루만 변호인단을 따라오고 다음 날 국정원에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정원 직원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국정원 직원들과 대리인(정부법무공단 변호사)에게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데리고 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따졌다. 여동생이 희망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여동생이 희망해서 갈 수 있다면 우리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가고 싶으니 데려가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정원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여동생을 데려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여동생이 하겠다는 대로 해 주라고 설명해 주었다. 결국 우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와 국정원에서 극적으로 구출해냈다. 돌이켜보면 인신구제 청구를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인신구제청구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은 비보호결정을 계속 연기하면서 여동생을 구금할 수 있고, 여동생 역시 밖으로 나올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동생을 민변 사무실로 데리고 와 그 동안의 사정을 천천히 들었다. 여동생은 처음엔 우리 변호인단을 믿지 않다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를 함께 만나자 얘기를 시작했다. 여동생의 입에서는 엄청난 말들이 나왔다. 고문, 폭행, 협박과 회유를 당한 이야기를 토해냈다. 201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아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바로 여동생은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것은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국정원은 민변에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 이름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증거조작이 아닌 간첩조작

이 사건을 변호인단은 간첩조작사건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없는 간첩을 위법한 수사를 통해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고문과 위법수사 등을 통해 만들어 낸 여동생의 진술과 조작된 물증으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벌인 사건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여동생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 역시 조작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유우성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제출한 사진출력물은 조작된 것이었다. 국정원은 사진파일은 숨기고 출력물만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이 사진파일을 분석해 보니 중국연결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이폰 사진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통해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우성은 수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수사관에게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사진만 출력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유우성이 북한에 밀입북했다고 한 시기에 중국에서 통화한 기록이 존재했다. 검찰은 이 통화 기록을 검사가 기소한 2013년 2월 경보다 한 참 전인 2012년 12월 초에 확보했고도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유우성이 밀입북했다'고 기소했다. 매우 악의적인 기소였다.

이외에도 수사 초기 여동생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 현장조사를 했다며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역시 무관한 사진들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USB를 샀다고 한 슈퍼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냈고, 그 장소는 여동생의 진술과 달리 매우 먼 곳에 있었다. 연길에서 살고 있는 집이라고 찍어 온 사진은 실망을 넘어 헛웃음이 나게 했다. 연길에 있는 아파트 70X호라고 하며 현관문 사진을 찍어 온 곳은 7층이 존재하지 않고, 6층까지 밖에 없었다. 게다가 현관문의 번호도 전혀 달랐다. 이러한 증거들은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믿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변호인단은 증거조작이 아니라 간첩조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위조 사실 밝혀낸 과정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여동생의 용기 있는 진술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쉽게 끝날 것이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검사도 항소이유에서 1심과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했고, 신청한 증인들 역시 정황에 대한 증인들이라 무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심 재판 도중 자신이 국정원 공작원이라고 소개하며 변호인단에게 접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양승봉 변호사를 찾아 와 항소심에서 출입경기록이 조작되어 나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돌아갔다. 그 이후 2013년 11월 1일 검사는 정말로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양승봉 변호사와 나는 위조기록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설마 했는데 겁 없이 위조하다니...

변호인단은 증거를 받자마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발급경위를 밝히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공문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뒤에 밝혀졌지만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이로 인해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변호인단은 검사들도 위조를 알고 있었고 위조에 개입한 정황도 있으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위조 사실을 밝혀낼 방법을 논의했다. 변호사가 직접 중국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중국에 돌아 간 여동생에게 증거수집을 부탁했다. 그리고 유우성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 출입경기록을 정식으로 발급받았다. 여동생은 지인들과 함께 공안국을 찾아가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언론사들과 함께 다시 찾아가 위조사실을 재확인 했고, 발급관청인 화룡시 공안국에 찾아가 발급사실이 없다는 것과 위조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받았다. 다만, 공안국 공무원들이 이를 문서로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대화장면을 촬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위조 출입경기록은 유우성의 여권기록과도 명백하게 다르게 변경되어 있었다. 이 역시 증거로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에 대해 모두 위조사실을 확인하였고 입증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왜 무모하게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하는지 계속 의구심이 들었고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닐지 걱정했다. 그래서 중국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자고 제안했다. 변

회인단 회의에서 사실조회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회신이 올 지, 사실대로 회신해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변호인단은 '진실의 힘'을 믿어 보기로 하고 일단 신청하고, 회신이 너무 늦으면 철회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2013년 12월 20일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사들은 마지못해 동의하였면서 같은 달 23일 경 별도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공은 중국정부로 넘어갔다. 한편, 법원은 2014년 2월 경 재판부 변동이 예상되어 그 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한 상태였다. 유우성이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못미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변론을 들었던 재판부라 변경된 재판부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와는 별도로 2014년 1월 3일 경 유우성은 경찰청에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성명불상자들을 국가보안법위반 무고날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2013년 1월 경 중국의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았고, 검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어 결심공판을 연기하자고 연락을 했다. 이 연락을 받은 양승봉 변호사는 현 재판부에게 판결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였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변경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했다. 변호인단은 사실조회를 철회할 것인지 논의했으나 이미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고 다음 재판부에 미루기로 하였으니 사실조회를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 내릴만한 순간이었다.

2014년 2년 13일경 아무도 예상 못한 중국정부의 회신이 온 것이다. 유우성 사건에 있어 두 번째의 큰 기적이었다. 너무 기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에 화가 났다. 중국에서 회신이 온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공판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안1부장을 비롯하여 이미 부장으로 승진한 이시원, 이문성 부장검사와 공안1부 주요 검사 3명이 추가로 보강되어 총 6명의 검사가 공판에 관여했다. 이때부터는 검사가 변호사보다 많았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해답은 알고 보면 늘 가까운 곳에 있다

증거조작을 밝힌 이상 항소심 재판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으나 검찰의 총력전에 변호인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우리도 원점에서 증거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동생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진술이었다. 비록 많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우성의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하는 진술들이기 때문이다. 이 증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공개재판주의 위반이었다. 해답은 알고 보면 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증거보전재판은 조서에 비공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서 어디에도 비공개의 사유와 결정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개재판주의 위반으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이 판례를 인용하여 검찰의 마지막 무기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검찰은 주요증거 모두를 잃게 되어 버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여동생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여동생을 불법적으로 감금하여 조사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변호인 으로서는 완벽한 승리였다. 그러나 검사는 또 상고했다.

민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완벽한 승리’

이 사건은 변호사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변론이었다. 그리고 유우성과 그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풀어 주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가폭력을 사죄할 수 있었다. 나아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희망을 주었다.

이런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민변이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같은 길을 걸어 온 선배가 있고, 옆에 같이 고생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이러한 변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참고로 국정원 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민변은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려주었다. 이 사건은 변호인들과 피고인의 절대적인 신뢰감 형성이 큰 힘을 발휘했다. 처음에 유우성을 믿지 않았던 변호사들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강한 믿음을 생겼다. 무엇보다 여동생이 나와서 한 진술들에 변호인단 모두가 크게 분노했고 이제는 더 이상 유우성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양승봉 변호사는 이를 두고 ‘애국심’이라 표현을 했다.

한편,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인 중에서 범죄지인 중국 연길 현장을 다녀온 사람은 변호인들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검찰 증거의 모순점과 조작을 밝혀낼 수 있었고, 연길얘기를 하면 검사들이 반박하기 어려웠다. 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 천낙봉, 장경옥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와 검찰에 예리한 공격을 가했다. 이미 국정원에서 ‘악명’이 높은 변호사들이었다. 이 재판에서의 승리는 매일 유우성을 접견하고 수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는데는 양승봉 변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정에서의 프리젠테이션은 내 담당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변론에 접목시키려 노력했다. 변론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각종 신청과 의견서를 작성한 김진형, 김유정 변호사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런 변호사들의 조합으로 거의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재판을 준비했기 때문에 증거조작을 밝혀낼 수 있었다.

왜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조작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고백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유우성 사건이 조작되고 언론에 공개 될 당시 국정원은 댓글사건으로 궁지에 몰려가고 있었다. 한편, 2012년 12월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국정원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 걸었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압문건'이 공개된 바와 같이 이 사건도 그러한 정치공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유우성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 임용됐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보면 오세훈 시장 당시에는 간첩행위를 하지 않다가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인 2012년 7월경 탈북자 정보를 넘겼다고 기재하고 있다. 당연히 조직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제 조작을 한 국정원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 직원 개인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정원 직원은 간첩사건을 수사해서 유죄로 이끌어 낼 경우 인사에 있어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포상금도 주어진다 고 알려져 있다. 반면, 조작을 하다 걸려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조작의 열매는 매우 달콤하지만 들켜도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건을 조작할 유혹이 매우 클 것이다. 나아가 국정원 직원들은 불법을 분업화하는 방법으로 개개인의 책임과 죄책감을 낮춘다. 이 사건에서 유우성이나 여동생을 수사한 직원들은 개개인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있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수사가 불법인지 아니면 진짜 간첩을 잡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내부 수사정보도 모두 공유하지 않는 국정원 수사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국정원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조작을 하기 쉽기 때문에 조작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간첩조작이 남긴 교훈

증거조작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다양하다. 유우성이 간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다. 설사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이다. 그것도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물론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다. 간첩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가 전제가 될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그냥 단순하게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거나 유우성 개인에 대한 신상공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인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데 증거가 없다”에 대하여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더 이상 의혹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주장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한 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고, 검찰 내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기소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처음부터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었던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고, 결국 증거조작 및 간첩조작의 진상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우성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만 나오고 잊혀진 줄 알았던 ‘조작’이라는 단어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 있고 언제든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이 무고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분노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유우성 개인의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증거를 위조한 사람들의 처벌에 관한 문제로 그쳐서도 안 된다. 이러한 증거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들의 경우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위법한 수사가능성과 조사권한 남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이 남아 있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수가 그 처방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작 간첩’은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 것이다.